

과천도시공사 과천CS사랑나눔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0. 2. 5. 지침 제17호

개정 2022. 8.31. 지침 제55호

개정 2023. 5. 3. 지침 제70호

개정 2025. 9. 3. 지침 제93호

개정 2026. 9. 9. 지침 제10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 “과천CS사랑나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9.9.)

제2조(구성) ① “과천CS사랑나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3., 2026.9.9.)

② 위원장은 운영관리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각 노동조합부위원장(수석부위원장 포함)이 된다.(개정 2022.8.31., 2025.9.3., 2026.9.9.)

③ 위원은 기부 등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부서에서 추천받아 추천직 위원으로 임명한다.(2025.9.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2.8.31. ,2025.9.3., 2026.9.9.)

제3조(기능) 위원회는 공사의 기부문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심의 한다.(개정 2026.9.9.)

제4조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6.9.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추천직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신설 2023.5.3.)(개정 2026.9.9.)

제7조(해임)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고,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개정 2026.9.9.)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개정 2026.9.9.)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개정 2026.9.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2. 8. 31. 지침 제55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 5. 3. 지침 제70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 9. 3. 지침 제93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6. 9. 9. 지침 제106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